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3081

제출년월일: 2022년 1월 21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「공직선거법」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규정함(안 제4조의4제1항).
- 나. 임산부 교통비의 지급방법을 규정함(안 제4조의4제2항).
- 다. 임산부 교통비의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함(안 제4조의4제3항).
- 라.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접수 후 처리 기한을 규정함 (안 제4조의4제4항).
- 마. 임산부 교통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의4제5항).
- 바.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의4제6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2) 입법예고('21. 11. 4.~11. 24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수 있다.
 - 1.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
 - 2.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, 교통카드,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있다.
 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 - ⑥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

다.

⑦ 그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 년 7월 1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 신 설 ></u> | 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시 |
| | <u>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</u> |
| | 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 |
| | 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|
| | 지원할 수 있다. |
| | 1.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|
| |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|
| |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 |
| | <u>부</u> |
| | 2.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 |
| | 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 |
| | <u>산부</u> |
| |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 |
| | 통비를 현금, 교통카드, 바우처 등 |
| | 으로 지급할 수 있다. |
| | 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|
| |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|
| |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|
| | 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 |
| | 원을 신청할 수 있다. |
| |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 |
| |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 |
| | 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 |
| |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|
| |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|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| 이 허위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| | | |
| |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| | | |
| |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 | | | |
| | ⑥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 | | | |
| | 런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| | | |
| | <u>수 있다.</u> | | | |
| | ⑦ 그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| | | |
| |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 | | | |
| | <u>로 정한다.</u> | | | |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1. 비용발생 요인
 - 조례안 제4조의 4 서울시 모든 임산부에게 70만원 이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로 (70만원×임산부 수)만큼의 비용 발생
- 2. 비용추계의 전제
 - 비용추계기간 : 향후 5년(2022년~2026년)
 - 매년 출생아수가 변동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기는 어려움
 - 따라서 아래 결과는 2022년 예정 출생이수(48,000명)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함
 - 2022년의 경우 7월부터 시행이므로 6개월치 반영. 차년도부터는 1년치 반영
-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연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세출 | 사회보장적수혜금 | 16,800 | 33,600 | 33,600 | 33,600 | 33,600 | 151,200 |
| | 계 | 16,800 | 33,600 | 33,600 | 33,600 | 33,600 | 151,200 |

4. 재원조달 방안 : 해당 없음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유하민(02-2133-5176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대상아동('22년 출생아수) : 48,000명

- 보건복구부·2022년 「첫만남·0용권」 시업 출생아 수 47,900명 국민선강보험공단 2021년 분만 예정 암신부 수 49,436명 참고

2. 지원비용 : 1인당 70만원

3. '22년 소요예산 : 16.800백만원(시비 100%)

- 사회보장적 수혜금 : 700천원 × 48,000명 = 16,800백만원